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907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 
나. 350,000원 및 2023. 2. 25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 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안홍준

별지